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7. 23 선고 2019가단5081236 판결 [사해행위취소]

---

## 전 문

원 고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두현

담당변호사 이선영

피 고 1. 주식회사 A

2. B

3. C

변 론 종 결 2021. 6. 11.

판 결 선 고 2021. 7. 23.

##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139,922,148원 및 그 중 28,760,167원에 대하여 2019. 2. 25.부터, 그 중 110,543,146원에 대하여 2019. 3. 20.부터 각 2019. 5. 10.까지는 연 10%,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피고 C은 피고 주식회사 A, B과 연대하여 위 가항 기재 금원 중 29,379,002원 및 그 중 28,760,167원에 대하여 2019. 2. 25.부터 2019. 4. 19.까지는 연 10%,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

###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에서 인정한 ‘연 12%’의 지연손해금율을 ‘연 15%’로 구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주문 제1항과 같은 판결을 구함.

###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일부 기각하는 부분 :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 B에 대해서는 소장부분 최종 송달일 다음날부터, 피고 C에 대해서는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 A, B에게 소장 부분이 최종 송달된 날은 2019. 5. 10., 피고 C에게 소장 부분이 송달된 날은 2019. 4. 19.임. 한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768호, 시행 2019. 6. 1.)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12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부칙에서, 이 영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으로서 제1심의 변론이 종결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한 법정이율은 2019년 5월 31.일까지 발생한 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고, 2019년 6월 1.일 이후 발생하는 분에 대해서는 이 영의 개정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함. 따라서 피고들에게 2019. 6. 1.부터 적용되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지연손해금율은 연 12%임. 위 기간에 대하여 연 12%를 초과하여 청구된 지연손해금 부분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함

판사 소병석

[별지]

## 청 구 원 인

### 1. 당사자의 지위

####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 등의 채무를 신용보증하여 동 기업의 자금유통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 특수법인입니다.

#### 나. 피고들의 지위

(1)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1'이라 합니다)은 사업을 영위하던 중 부족한 사업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원고 재단의 보증을 받아 소외 D은행 및 중소기업은행(이하 '소외 은행들'이라 합니다)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뒤 동 대출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법인이고,

(2) 피고 B(이하 '피고2'라 합니다), 피고 C(이하 '피고3'이라 합니다)은 원고 재단의 소외 은행에 대한 신용보증채무의 이행으로 피고1이 원고 재단에 대하여 부담하는 구상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한 자들이며(피고 C은 이 사건 보증1에 대하여만 연대보증하였습니다),

(3) 피고 주식회사 E(이하 '피고4'라 합니다), 피고 F 주식회사(이하 '피고5'라 합니다)은 피고1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들(이하 '이 사건 부동산들'이라 합니다)에 관하

여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동 부동산들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 받은 수익자들입니다.

## 2. 구상금 청구 부분(피고1 및 피고3에 대한 청구)

###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1) 원고는 피고1의 보증 부탁을 받아, 피고2 및 피고3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갑 제1호증의 1 및 2, 각 신용보증약정서).

(2) 피고1이 원고 재단의 보증에 의한 주채무인 대출금을 소외 은행들에게 변제기한(기한이익의 상실 포함)내에 상환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채권자인 소외 은행들로부터 보증채무이행을 청구 받아 보증채무를 이행하게 되면, 피고1 내지 피고3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① 원고가 그 이행을 위하여 지급한 대위변제금액 및 이에 대한 이행 당일로부터 완제일까지 원고 소정의 지연손해금율에 의한 지연손해금과, ② 해지되지 아니한 신용보증금액에 대한 보증료 납입일 익일부터 보증소멸일 전일까지의 추가보증료 및 ③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그 권리를 실행 또는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법적절차비용(가지급금)등 모든 부채채무까지도 지급하기로 약정되어 있습니다(신용보증약정서 제3조, 제10조).

### 나. 신용보증 및 대출의 실행

원고는 위 가.항과 같이 피고1 내지 피고3과 신용보증약정 및 연대보증 약정을 체결하고 ① 2016. 8. 22., 보증원금 28,262,500원, 보증기한 2017. 8. 10., 보증방법 개별보증으로 된 신용보증서(이후 보증기한은 2019. 8. 9로 변경되었으며 이하 '보증1'이라 함

니다.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신용보증서 및 각 신용보증 조건변경 통지서)를, ② 2018. 7. 31., 보증원금 108,375,000원, 보증기한 2019. 7. 30., 보증방법 개별보증으로 된 신용보증서(이하 '보증2'라 합니다. 갑 제2호증의 4, 신용보증서)를, 각 발급하였고 피고1은 이 신용보증서들을 소외 은행들에 제출하고 대출을 받았습니다.

#### 다. 보증채무의 이행

피고1은 소외 은행들로부터 위와 같이 대출받은 후, 2018. 10. 19. 기한이익 상실로 보증사고를 유발하였고(갑 제3호증의 1 및 2, 각 신용보증사고통지서), 소외 은행들은 피고1이 변제력을 상실하여 대출금 및 이자 등 주채무를 상환하지 못하게 되자, 원고 재단에 보증채무이행을 청구하여, 원고는 소외 은행들에게 2019. 2. 25. 보증1과 관련하여 금 28,760,167원을, 2019. 3. 20. 보증2와 관련하여 금 110,543,146원을 각 대위변제 하였습니다(갑 제4호증의 1 및 2, 각 대위변제증서).

#### 라. 법적절차비용

원고는 구상금 채권의 보전비용으로 금 618,835원을 지출하였습니다(갑 제5호증, 구상채권내역명세)

#### 마. 지연손해금율

원고 소정의 지연손해금율은 대위변제일을 기산일로 하는데, 이 사건 최초 대위변제일인 2019. 2. 25.부터 현재까지는 연 10%입니다(갑 제6호증, 손해금율변경).

#### 바. 구상금채무 이행 의무

그렇다면,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금 139,922,148원(대위변제금 139,303,313원(보증1 대위변제금 28,760,167원 + 보증2 대위변제금 110,543,146원) +

법적절차비용 618,835원) 및 이 중 보증1 대위변제금 28,760,167원에 대하여는 2019. 2. 25.부터, 보증2 대위변제금 110,543,146원에 대하여는 2019. 3. 20.부터, 나. 피고 C 은 위 가.항 피고들과 연대하여 위 가.항 기재 금원 중 금 29,379,002원(보증1 대위변제금 28,760,167원 + 법적절차비용 618,835원) 및 이 중 보증1 대위변제금 28,760,167원에 대하여 2019. 2. 25.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10%,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 입니다.

( 2019-4-3 )

## 구상채권내역명세

[일: [ -- ] - [ -- ]]

청구구분:

손해금 계산기준일 2019-04-03

page: 1

| 고적번호 | 대표자명 | 보증종류  | 보증일자       | 보증금액        | 이행일         | 추가보증료 | 취수보증료 | 이환금보증료  | 손해금         | 합계                           |
|------|------|-------|------------|-------------|-------------|-------|-------|---------|-------------|------------------------------|
| 기업채명 | 보증번호 | 대위구사유 | 보증기간       | 보증잔액        | 원금          | 연회보증료 | 수수료   | 가치감금    | 합계          | 주채권은행                        |
|      |      | 대출보증  | 2018-08-22 | 28,282,500  | 2019-02-25  | 0     | 0     | 0       | 299,420     | 사용지정<br>은행<br>금융권인           |
| 사    |      |       | 2019-08-08 |             | 28,780,167  | 0     | 0     | 618,835 | 28,679,422  |                              |
|      |      | 대출보증  | 2018-07-31 | 108,375,000 | 2019-03-20  | 0     | 0     | 0       | 454,286     | 사용지정<br>통신회사<br>통신회사<br>통신회사 |
| 사    |      |       | 2019-07-30 |             | 110,543,146 | 0     | 0     | 618,835 | 111,618,287 |                              |
| 합계   |      |       |            | 136,657,500 |             | 0     | 0     | 0       | 753,706     |                              |
|      |      |       |            | 0           | 139,303,213 | 0     | 0     | 618,835 | 140,675,854 |                              |

| 예금주    | 가상계좌번호 | 은행명 |
|--------|--------|-----|
| 경기신보_주 |        | 은행  |
| 경기신보_  |        | 은행  |
| 경기신보_  |        | 은행  |

[끝]

